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유엔사”의 책임을 묻는다.

정전협정 전문에 의하면 쌍방사령관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서 적대행위의 공간적 범위는 비무장지대만이 아니라 ‘한국’전체이다. 또한 정전협정 7항에 의하면 군사분계선의 통과권은 군사정전위에 있고, 9항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출입허가권은 사령관에게 있다. 그러나 비무장지대 출입은 민사행정, 구제사업, 군정위가 허가한 사업에만 한한다.

그런데 대북전단풍선은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에 진입하며, 군사분계선을 통과하여, 북측영토에 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북전단의 내용으로 볼 때 ‘한국에서의 적대행위’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극하여 충돌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전협정 관리책임을 진 일방인 “유엔사”가 스스로 작성한 『유엔사규정 95-3 (P518 한국전술지대 비행절차)』에 따르면 “유엔사”는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구역 및 한강하구지역에 대한 공역통제’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 남측에 설정된 민통선의 상공에 해당하는 (RK)P518 한국전술지대 내 지상 800피트 이하에서의 공역통제권은 해당지역 한국육군 1·3군사령관(지작사령관, 군단장에게 위임)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민통선상공에 대한 통제권은 “유엔사”가 한국군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민통선 남단 접경지역에서 날아오르는 대북전단풍선에 대한 통제는 육군이 아닌 경찰에 있다. 이에 경찰직무법에 따라 대북전단풍선 단체에 대한 통제는 경찰이 행하고 있다. 풍선의 이륙지점에 따라 경찰과 군으로 통제주체가 바뀌지만 최종적으로 군사분계선의 통과를 막아야하는 책임은 “유엔사”에 있다.

그러나 “유엔사”는 평화행위에 대해서는 군사분계선의 통과를 막고,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통과를 방치하고 있다. “유엔사”의 통제능력의 한계로 군사분계선통과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 평화행위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막고,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듯 조장하고 있다.

우리는 대북전단문제가 한국정부의 책임보다 “유엔사”의 책임이 더 크고 최종적인 것임을 지적한다. “유엔사”는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할 대책을 마련하라. 그러한 대책을 마련할 능력이 없다면 모든 권한을 한국정부에 이양하라.